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2. 9.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채우진 의원 외 7명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○ 제안자 : 채우진 의원 외 7명

○ 제안일 : 2022. 11. 22.

○ 회부일 : 2022. 11. 25. (의안번호 : 22-148)

2. 제안이유

○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(강습) 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·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시간 범위([별표1] 제20호가목)

4. 관계법령

○ 「주차장법」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

5. 절차이행

○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함.

6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안은 채우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,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(강습)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·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[별표 1] 제20호가목 중 “2시간”을 “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”으로 한다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관장하는 체육관 사용에 따른 수강회원이 프로그램 이용시간과 무료주차 시간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대한 3시간으로 변경하여 체육관 사용자의 이용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또한,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규정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

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별표 1: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개정전)

관련 주차요금 내용: 제20호 가목
20.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(이하 이 호에서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단,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가. 공공시설 이용(강습)자의 차량: 수강 시마다 2시간 이내 면제 나.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: 정기권 50% 할인 (단, 중복할인 불가)

별표 1: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개정후)

관련 주차요금 내용: 제20호 가목
20.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(이하 이 호에서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단,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가. 공공시설 이용(강습)자의 차량: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 이내 면제 나.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: 정기권 50% 할인 (단, 중복할인 불가)